

## 2. 개인정보보호세칙 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"개인정보"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</p> <p>2. "개인정보취급자"란 대학 내에서 대학 구성원의 개인정보 수집, 보관, 처리, 이용, 제공,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3. "정보주체"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4. "개인정보파일"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(集合物)을 말한다.</p> <p>5. "처리"란 개인정보의 수집, 생성, 기록, 저장, 보유, 가공, 편집, 검색, 출력, 정정(訂正), 복구, 이용, 제공, 공개, 파기(破棄)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.</p> <p>6. "고유식별정보"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면허번호,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.</p> <p>7. "영상정보처리기기"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·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.</p> <p>8. "개인영상정보"란 영상정보처리기에 의하여 촬영·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,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</p> <p>9. "출입통제시스템"이란 보안이 필요한 장소의 출입 및 퇴실을</p>	<p>6. (삭제)</p> <p>8. (삭제)</p>	<p>제5조~11조, 제13조~17조 삭제에 따라 불필요한 용어정리</p>

<p>자동으로 통제하는 장치를 말한다.</p> <p>제4조(역할과 책임) ①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대학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실무부서와 개인정보보호 실무관련자를 두어야 한다.</p> <p>② 개인정보보호실무부서는 대학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단위조직으로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③ 개인정보보호 실무를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실무관련자로는 개인정보보호관리자, <u>개인정보보호담당자</u>, 개인정보보호분임관리자, 개인정보보호분임담당자,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개인정보보호담당자</u>는 ..(이하 생략)</p> <p>3. ~ 5. (생략)</p> <p>제5조(개인정보 보호원칙) ① 대학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시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한다.</p> <p>② 대학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며, 그 목적 외의 용도로는 활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③ 대학은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며,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.</p> <p>④ 대학은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준용한다.</p> <p>제6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 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하여야 하며, 수집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한다. 이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는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</p>	<p>제4조(역할과 책임) ①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대학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실무부서와 개인정보보호 실무관련자를 두어야 한다.</p> <p>② 개인정보보호실무부서는 대학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<b>수행</b>하는 단위조직으로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③ 개인정보보호 실무를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실무관련자로는 개인정보보호관리자, <b>개인정보보호실무담당자</b>, 개인정보보호분임관리자, 개인정보보호분임담당자,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b>개인정보보호실무담당자</b>는 ..(이하 생략)</p> <p>3. ~ 5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(삭제)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(삭제)</b></p>	<p>아래와 같이 변경 개인정보보호실무부서 및 실무부서 담당자 지정에 따른 명칭 변경</p> <p>관련 실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내부관리계획을 수립(제21조 신설)하고 내부관리계획에 본 내용을 포함</p> <p>■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,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 제1,3항</p>
---	--	---

<p><u>이용 가능하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선, 서면 또는 전자우편(홈페이지)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</u></li> <li><u>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</u></li> <li><u>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</u></li> <li><u>4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</u></li> </ol>		
<p><u>제7조(개인정보의 제공) ①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거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</u></li> <li><u>2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</u></li> <li><u>3.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</u></li> <li><u>4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</u></li> </ol>	<p><b>(삭제)</b></p>	
<p><u>제8조(개인정보의 이용·제공 제한) ① 개인정보를 제6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7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</u></li> <li><u>2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</u></li> <li><u>3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 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</u></li> <li><u>4.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</u></li> <li><u>5.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</u></li> </ol>	<p><b>(삭제)</b></p>	

<p>③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(별지 제1호 서식)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</p>		
<p>제9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 정보주체에게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해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.</p>	<p><b>(삭제)</b></p>	
<p>제10조(개인정보의 파기) ①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의 경과,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되어야 한다. 단, 관련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는 수록된 데이터 및 출력물을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, 파쇄기, 문서 소각, 소자 처리, 물리적 파손 등의 방법을 통해 조치하여야 한다.</p>	<p><b>(삭제)</b></p>	
<p>제11조(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) ① 대학이 외부 기관에 위탁한 업무 중 개인정보가 취급되는 경우 개인정보 당사자에게 유선, 서면 또는 전자우편(홈페이지)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전 고지한다.</p> <p>② 대학에서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계약서 상에 명확히 규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개인정보의 기술적,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</li> </ol> <p>③ 위탁업체와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단위조직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의무와 책임을 위탁업체에 공지하고 규정의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한다.</p>	<p><b>(삭제)</b></p>	
<p>제13조(개인정보파일대장)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단위조직의 개인정보보호분임관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생성 시 개인정보파일대</p>	<p><b>(삭제)</b></p>	<p>관련 실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내부관리계획을</p>

<p>장(별지 제2호 서식)을 작성하여 정보주체자가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		<p>수립(제21조 신설)하고 내부관리계획에 본 내용을 포함</p>
<p>제14조(개인정보의 열람)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열람요구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제출하여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개인정보보호분임관리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② 개인정보보호분임관리자는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열람의 허용여부, 열람 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개인정보보호분임관리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④ 개인정보보호분임관리자는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</li> <li>2. 학업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</li> <li>3.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의 심사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</li> <li>4.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</li> <li>5. 개인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</li> </ol>	<p><b>(삭제)</b></p>	
<p>제15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 ①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분임관리자에게 개인정보 정정·삭제요구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제출하여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 할 수 있다.</p> <p>② 개인정보보호분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정정·삭제 조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개인정보보호분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</p>	<p><b>(삭제)</b></p>	

<p>청구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청구의 내용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내용 및 사유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		
<p>제16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)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분임관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정지요구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제출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② 개인정보보호분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</li> <li>2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</li> <li>3.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</li> </ol> <p>③ 개인정보 보유부서장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(삭제)</p>	
<p>제17조(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) ① 대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그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.</p> <p>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신고된 침해사실을 확인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(삭제)</p>	
<p>(신설)</p>	<p>제20조(정보주체 권리 보장)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(또는 대리인)가 해당 개인정보의 열람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5장,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그에 따른 합리적인 내부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이유 및 처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p>	

<p>(신설)</p>	<p><u>제21조(내부관리계획)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매년 내부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내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2.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3.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4.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5.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</li> </ol> <p><u>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,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	<p>관련 실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내부관리계획을 행정자치부 고시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)에 따라 수립 예정 (제5조~11조, 제13조~17조 삭제 내용 반영)</p>
<p>(신설)</p>	<p><u>제22조(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태점검)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대학 내 개인정보 보호 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안 관리 상태와 적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회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의 관리와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2.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·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3. 정보주체의 열람, 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·처리 정지의 요구 및 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4. 그 밖에 대학 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의 안정성 및 적정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</u></li> </ol> <p><u>② 개인정보보호실무관련자는 실태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.</u></p>	
<p>(신설)</p>	<p><u>제23조(제재) 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법령 등 위반으로 대학이 과태료 등 재산상 제재를 받은 경우, 그에 관하여 귀책 사유가 있는 해당 부서 등이 이를 부담한다.</u></p> <p><u>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유·</u></p>	

	<u>노출 시 필요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.</u>	■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
	<u>부 칙</u> <u>이 세칙은 2018년 00월 00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</u>	
(별지 제1호 서식)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	<u>(삭제)</u>	내부관리계획에 포함 예정
(별지 제2호 서식) 개인정보파일대장		
(별지 제3호 서식) 개인정보(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) 요구서		